

1. 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를 상향하는 한편,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할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안 제5조제1항 개정)

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행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수를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로 규정

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안 제6조제1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할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제6조제1항제1호(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로 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대”를 “1대(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100명당 1대)”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을 “버스·지하철”로, “어려운”을 “어려운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제1항제1호(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다만, 해당 시·군에서 출발한 동일 차량이 목적지를 왕복하여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이용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도 포함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u>1대</u> 를 말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 ----- ----- ----- ----- ----- <u>1대(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100명당 1대)</u> ----
② (생략)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65세 이상의 <u>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u> 3.·4. (생략) ②·③ (생략) ④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u>버스·지하철</u> ----- <u>어려운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u> ----- --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제1항제1호(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다만, 해당 시·군에서 출발한 동일 차량이 목적지를 왕복하여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이용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도 포함할 수 있다.